

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(한준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51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1. 24.

발 의 자 : 한준호 · 전현희 · 신영대
서미화 · 김원이 · 박상혁
차지호 · 정태호 · 남인순
김태선 · 김 윤 · 최혁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, 정책연구, 시험, 인증,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,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, 현재 항공기 인증, 안전기술 개발,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.

최근 드론, 도심항공교통(UAM)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,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,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,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

시되지 않았음.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「항공사업법」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「항공안전기술원법」에 명시하여,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,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.

또한,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,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,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(안 제6조 등).

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호 중 “제28조, 제108조제1항, 제124조”를 “제28조”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「항공안전법」 제108조제1항, 제124조, 제129조제5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 허가, 안전성인증 및 검사

5. 「항공사업법」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

제1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차입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기술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	제6조(사업)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항공안전법」 제20조, 제21조, 제22조, 제27조, <u>제28조</u> , 제108조제1항, 제124조 및 「공항시설법」 제52조에 따른 증명, 승인, 인증 등의 기술연구 및 지원	2. ----- ----- <u>제28조</u> -- ----- ----- -----
<u><신 설></u>	<u>2의2. 「항공안전법」 제108조 제1항, 제124조, 제129조제5항에 따른 시험비행 등 허가, 안전성인증 및 검사</u>
3. · 4. (생 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5. 「항공사업법」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 항공산업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</u>
5. · 6. (생 략)	6. · 7. (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)
제12조(재원) 기술원의 설립,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	제12조(재원) ----- ----- -----

조달한다.	-----.
1. · 2. (생략)	1. · 2. (현행과 같음)
<u><신설></u>	<u>3. 차입금</u>
<u>3.</u> (생략)	<u>4.</u> (현행 제3호와 같음)